【첨부 3】

선 상 투 표 신 고 서

이 신고서는 2022년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·시·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.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이 신고서를 「공직선거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라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경우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·시·군의 팩시밀리 번호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.

주 소 (주민등록지)	우편번호 (구·시·군) (읍·면) (대로·로·길)			세 대 주 성 명	
성 명		생년월일 (성 별)	(남 , 여)	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	
승선(예정)선박 명칭 (영문명)	팩시밀리 번호(1개 이상 기재)			선박의 위성통신 전화번호	
	①				
	②				
	③				

선상투표 신고사유란의 해당 사유에 "∨" 표시를 하여야 하며, 해당 확인자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리지 아니합니다.

선상투표 신고사유	확 인 란
□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[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(裸傭船) 포함]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	·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·성명 ㊞
□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[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(裸傭船) 포함]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	·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·성명 ㊞
□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[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(裸傭船) 포함]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	·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·성명 ㊞
□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	· 선박소유자, 선박 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·성명 ㊞

본인은 「공직선거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상에서 투표하고자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㊞

( )구·시·군의 장 귀하

주 1. "주소"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습니다.
2. "선박의 명칭"란에는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명칭을 적습니다.
3. "팩시밀리 번호"란에는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할 수 있는 팩시밀리 번호를 적습니다. 또한,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시·도위원회로 선상투표지를 전송하는 때에도 같은 번호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로 전송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은 「공직선거법」 제179조제3항에 따라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.
4. "확인란"에는 선박 소유자,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·성명을 적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.
5.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.
6.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선상투표신고인에게는 선상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.
7. 거짓으로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「공직선거법」 제247조에 따라 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)될 수 있습니다.